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7.

발 의 자 : 김형동 · 이종성 · 강대식
윤재갑 · 임이자 · 조명희
김태호 · 이주환 · 배현진
정운천 · 서일준 · 권은희
김성원 · 유경준 · 권명호
정성호 · 최형두 · 홍석준
양정숙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·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.

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상황은 가격급락 등 시장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.

특히, 현재까지 고품연료 SRF 시장 침체로 인한 폐비닐 적체 등이 우려되고 폐지 가격은 2020년 5월 58.8원/kg으로 수거거부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으로 폐지,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, 폐

의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주요품목 전반으로 시장안정성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, 폐유리병,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(안 제34조의10 신설).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10(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·제공하고, 공공비축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4조의10(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·제공하고, 공공비축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